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-92호

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214호(2010.6.1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375(2014.9.24.)호, 제2015-214호(2015.6.17.)호, 제2015-419호(2015.11.11.)호, 제2016-226호(2016.7.6.)호 및 제2017-16호(2017.1.18.)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5-126(2015.11.25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7-134(2017.7.19.)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온천4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63조,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9조,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 내용 중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"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.

2019년 6월 5일

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온천4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-13번지 일원(금정구 장전동 511-2번지 일원 포함)

나. 면 적 : 227,44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신귀철)

나. 주 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19번길 65. 2층(온천동. 새마을금고 2층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7. 7. 17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(정정, 추가 등에 한함)

가.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(지장물)의 세목조서 : 별첨

가.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(지장물)의 세목조서

순번	수용 지장물의 표시		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동	지번	물건의종류 (구조및규격)	수량	주소	성명	권리	주소	성명	
1	동래구 온천동	297-3	소나무 (R30)	1주	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97-3	홍덕필				물건 추가 (미등기)
1	동래구 온천동	297-3	진달래 (H=1.5)	5주		홍덕필				물건 추가 (미등기)